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심 재 우**

1. 머리말
2. 연좌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3. 정치범에 대한 연좌제 적용의 실제
4. 『연좌안』을 통해 본 연좌의 실상
5. 맺음말

1. 머리말

19세기 후반 근대화 과정의 조선에서 그동안의 낡은 형률·형벌이 폐지되고, 근대적 형사사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때 일차적으로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된 대표적인 규정을 두 가지 제시하면, 緣坐制(1894년 6월) 및 斬刑·凌遲處斬刑(1894년 12월)의 폐지였다.[1]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혹한 신체 절단형인 능지처참형과 함께 연좌제는 당시 우선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낡은 악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연좌제'의 문제이다.

그럼 연좌제란 무엇인가?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사람까지 연대책임을 지게 하여 처벌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좌제는 엄밀히 구분하면 가족·친족 등에 대한 혈연적 연좌(緣坐), 지역주민이나 동료 관리들을 함께 벌주는 연좌(連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연원을 따지면 중국 고대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0-C01)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부교수
1)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Ⅰ, '緣坐를 勿施하는 件'(議案, 1894년 6월 28일) 및 '處斬·凌律을 廢止하되 用絞用砲하는 件'(勅令 第30號, 1894년 12월 27일).

형법에까지 소급할 수 있을 것이다.[2]

조선시대에 역모, 변란 등과 같은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 연좌제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 그런데 연좌제에 대한 인식은 '舊刑律 가운데 가장 봉건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정'[3]이라던가, '즉 連坐處斬의 刑은 단지 父子·妻女에 미칠 뿐만 아니라, 혹은 兄弟에 미치고, 이어 叔姪·從兄弟에 미치고, 때로는 外戚·姻戚에까지 미쳤으며, 근근 살해를 면한다 할지라도 혹은 家産을 籍沒 당하고, 公私의 노비로 되고, 혹은 職錄을 박탈되는 등 그 累가 一門同族에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4]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유독 불합리한 점과 조선 왕조에서의 극단적 적용의 폐해가 강조되어 왔다.

근대형법의 경우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은 행위자 자신에게만 묻는 형사처벌 개별화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신과 무관한 사건으로 처벌받는 연좌제 규정은 전근대적 낡은 형률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조선시대 연좌제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가 아직까지 충분히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연좌제의 성격을 성급하게 규정하고, 연좌제의 부정적 폐해에만 집중하여 조선의 정치문화를 단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판단이다. 연좌제의 실제 적용 사례를 추적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해석해내는 작업은 조선시대 정치문화를 읽어내고 이해하는 데 시급한 과제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물론 지금까지 연좌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서일교, 김두헌 등의 초기적 검토 외에도, 장병인, 윤재수, 김영범 등에 의해 연좌제 관련 법적 규정과 연좌제 적용 사례에 대한 일부 실증적 검토가 진행되었다.[5] 이 중 장병인의 연구는 조선초기 연좌율의 적용 사례를 일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범의 연구는 사회학자답게 조선시대 연좌제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이론적이고도 포괄적인 해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전자의 연구가 조선초기의 몇몇 사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 후자의 연구는 사료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아닌 해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좌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하기엔 제한적이다.

---

2) 중국 고대 및 당률의 연좌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니시다 다이이찌로 지음(천진호 등 옮김), 1998「연좌제에 대하여」『중국형법사연구』, 신서원 및 박춘택, 1996「唐律의 緣坐에 대한 일고찰」『법사학연구』 17호가 참고된다.

3) 서일교, 1968『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 254면.

4) 김두헌, 1980『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50-151면.

5) 윤재수, 1983「연좌와 연좌제고」『석당논총』 8 ; 장병인, 1987「조선초기의 연좌율」『한국사론』 17, 서울대 국사학과 ; 김영범, 1990「연좌제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망 : 조선시대를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24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연구사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연좌제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좌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에 대한 제도사적 고찰에 치중하기 보다는 연좌제가 실제 조선시대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법전에 규정된 법규와 이 법규의 실제 적용 양상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실제 사례의 분석은 조선시대의 법과 정치문화의 관계를 읽어내기 위한 유용한 시각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둘째, 연좌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 성과는 주로 조선왕조실록과 『대명률』·『경국대전』 등 법전에 기초하고 있다. 이 글도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하되, 규장각과 장서각에 소장된 영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연좌제 적용 실상을 자세히 기록한 『緣坐案』[6]을 발굴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던 『연좌안』 자료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누락된 부분도 확인되고 있지만, 연대기 자료에서 볼 수 없는 세밀한 연좌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7]

그간 조선시대 정치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쟁사적 시각, 내지 정치세력, 사건 분석에 초점이 두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가 효과적으로 수행된다면 정치사건의 처리와 처벌을 둘러싼 일련의 법운영의 특징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조선 정치문화에서 작용한 '연좌제'의 성격, 나아가 법과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좌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특징

연좌제의 내용과 기능,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법과 사회통제 체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좌제는 국가가 사회질서를

6) 필자가 분석할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 『연좌안』의 경우 겉표지에는 『連坐案』이라 되어 있지만, 내용은 죄인별로 '○○○緣坐'하는 식으로 '緣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중국 형률에 연좌제는 종류에 따라 혈연적 연좌는 '緣坐'로, 나머지 연좌는 '連坐'로 구분하여 썼지만 『연좌안』에서는 제목과 내용에서 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연좌안』의 내용은 모두 혈연적 연좌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겉표지에 적힌 대로 쓰는 대신 내용에 적혀 있는 緣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緣坐案』이라 표기하기로 한다.

7) 현재 남아 있는 『연좌안』은 『緣坐案』(장서각, K2-3440)과 『緣坐案』(규장각, 奎 15146)이다. 규장각본은 필사원본이지만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후대, 즉 일제시대 필사본인 장서각 소장본을 주로 활용하였다. 두 『연좌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중요한 작동 기제 가운데 하나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 사회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통제 시스템은 공식적·비공식적 장치, 각종 이데올로기적 통제 등 여러 가지 기제가 동원되어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현대사회 뿐 아니라 전통시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필자는 다른 연구에서 공식적 사회통제기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범죄통제의 내용과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8]

첫째, 조선시대 사회통제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국가기구를 통해 기본적으로 실현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재판기구, 경찰 및 감옥기구는 사회통제의 핵심을 담당한 국가 기관이었다.

둘째, 국가의 공식적 사법기구 외에도 지방사회 자치조직이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자치적 사회통제 기구로 鄕約·洞約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향약에서는 사족들의 자치적 刑罰權에 관한 규정이 실려 있었는데, 이는 사족들이 수령의 용인 아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까지도 자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었다.

셋째, 조선시대 사회통제는 국가의 실정법 체계와 지방사회 사족 자치질서의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 국가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과 친족을 통한 통제, 특히 연좌제 규정이다.

뒤에 살펴보듯이 조선 국가는 무거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그의 가족, 친족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연좌제를 형법에 마련해두고 있었는데, 바로 이 연좌제야말로 국가권력이 가족과 친족을 통해 개인의 일탈을 통제하는 전형적인 예가 아닐까 싶다. 이하 연좌제의 실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국가는 가족, 친족에 가해진 연좌 처벌 규정을 통해서 개인의 일탈·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꾀하였다.

이 같은 점은 우리와 유사한 법률문화를 공유한 전근대 중국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선시대 범죄통제 방식의 특징을 위와 같이 이해할 때 본고에서 다룰 '연좌제'가 사회·국가체계의 유지, 존속과 관련해서 차지하는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머리말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사실 엄밀하게 규정하면 형률상의 연좌는 다음 몇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부모, 형제를 비롯한 일정한 범위의 가족·일족이 벌을 받은 혈연적 연좌, 범죄인이 거주하는 일정 지역민에까지 벌이 미치는 지역적 연좌, 관리의 범죄 행위로 인해 연

8) 이에 대해서는 심재우, 2009『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 『심리록』 연구』, 태학사, 제1장 참조.

대책임을 진 동료관리에 처벌이 미치는 연좌 등이 그것이다.[9]

이 가운데 조선시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시된 것이 가족·친족 등에 대한 연좌이므로, 이하에서는 혈연적 연좌에 초점을 두고 관련 법규를 살펴봄으로써 연좌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앞선 연구에서 조선시대 형률에서 연좌제 관련 규정이 어떤 법전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조문 검토가 있었지만, 이 글에서는 그 의미와 조문의 변화상을 해석하는데 주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 명나라의 『大明律』을 형법의 일반법으로 채택, 사용하였다. 따라서 조선에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대명률』의 형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연좌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대명률』의 연좌 규정은 원칙적으로 조선에서도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명률』의 연좌제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대명률』에 등장하는 혈연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 규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謀反大逆罪에 대한 연좌이다. 이 규정은 조선시대 정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각종 정치적 사건과 역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죄인뿐 아니라 가족을 연좌시키기 위한 근거로 자주 등장하는 조문이므로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문에 따르면 謀反, 大逆罪를 범한 자는 首犯과 從犯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凌遲處死에 처하고, 다음과 같이 일족을 연좌시켰다. 즉 범인의 16세 이상 父子는 絞刑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子, 母女·妻妾·祖孫·兄弟·姉妹 및 아들의 妻妾 등은 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았다. 아울러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伯叔父와 형제의 아들도 모두 流三千里 安置刑에 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10]

여기서 謀反은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을 모의하는 것'을 말하고 大逆은 '종묘나 산릉 및 궁궐을 훼손할 것을 모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오늘날의 쿠데타, 반란, 국가전복 행위 등을 의미한다. 당시 역모 행위에는 일족 상당수가 연좌되었고, 심지어 범죄인의 16세 이상 父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좌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조문에서 연좌처벌이 면제되는 대상으로는 남자[男夫]로서 80세 이상이거나 篤疾에 걸린 자, 여자[婦人]로서 60세 이상이거나 廢疾에 걸린 자, 婚處가 정해져 있는 女息, 다른 사람에게 양

9)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형법전에 혈연적 연좌는 '緣坐'로, 나머지 연좌는 '連坐'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중 혈연적 연좌를 뜻하는 고대 3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唐律에 와서 연좌 범위가 5대(조, 부, 본인, 자, 손)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박춘택, 앞의 논문(1996) 참조). 한편, 조선 고종대의 법전 『대전회통』에는 '連坐'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緣坐' 명칭만 두 차례 나올 뿐이다.

10)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謀反大逆」

자로 정해져간 子孫 등이 그들이다.[11] 나이가 많거나 병든 사람, 다른 집안에 이미 시집가거나 양자로 들어간 자손들까지 연좌 처벌을 하지는 않도록 한 것이다.

둘째, 謀叛罪에 대한 연좌이다. 謀叛은 '본국을 저버리고 몰래 다른 나라를 좇을 것을 모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인은 斬刑에 처해졌고, 가족들은 다음과 같이 연좌 처벌을 받았다. 즉, 妻妾·子女는 공신의 집에 주어 노비로 삼고 재산은 몰수하였고, 父母·祖孫·兄弟는 流二千里 安置刑에 처했다.[12]

謀叛의 경우는 노비로 삼은 대상자는 처첩과 자녀에 한정하였고, 父子에게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서 謀反大逆의 처벌에 비해 그 가족들을 그나마 가볍게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 두 범죄는 크게 보면 왕조사회 군주와 국가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이자 국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함과 동시에 가족 등 일족들에게까지 연좌 처벌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대명률』에는 이들 두 가지 범죄 행위와는 조금 다른 혈연 연좌가 있었으니 그것이 셋째, 不道罪에 대한 연좌이다.[13] 여기서 부도 행위란 1) 한 집안[一家]의 일가족 세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사지를 끊어 죽이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살아있는 정기를 얻기 위해 사람 몸을 절단한 경우, 3) 독약[蠱毒]을 만들어 두고서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이며, 이처럼 극단적인 패륜 살인행위를 저지른 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연좌 처벌을 시행하였다. 즉, 이들 범죄 행위자는 능지처사나 참형으로 처형하였고, 재산은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주거나 관에서 거두었다. 그리고 그 처자 혹은 동거하는 家口를 연좌시켜 유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 『대명률』에 규정된 연좌형은 이른바 '十惡'으로 분류되는 중대 범죄, 즉 모반대역, 모반, 부도죄에 대해서 시행했다는 점에서 국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중범죄자에게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체제의 전복이나 여러 사람을 해치는 살인 행위는 당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겁게 연좌된 죄는 모반대역이었으며, 해당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로는 祖父, 아래로는 孫子에 이르기까지 5代가 모두 연좌에 연루되었다.[14]

---

11) 위와 같음.

12) 『大明律直解』 권18, 刑律 盜賊 「謀叛」

13) 『大明律直解』 권19, 刑律 人命 「殺一家三人」, 「採生折割人」, 「造畜蠱毒殺人」 등 참조.

14) 그런데 연좌하면 연상되는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三族이 조선에서 어떤 범위의 혈연을 가리키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개 三族을 父族, 母族, 妻族이라 생각하여 연좌 범위가 친가 뿐 아니라 외가나 처가 집안 식구들까지 두루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명률』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잘못이다. 그런데 이같은 오해는 조선후기에도 있었던 듯한데,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牧民心書』에서 三族을

그런데 조선의 경우 현실을 고려하여 『대명률』 규정과 별도로 『경국대전』 등 國典에 연좌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다. 즉 연좌제 관련 규정은 조선시대 법전에 추가되거나 일부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조정되는데, 이에 대해서 조선초기의 『經國大典』 규정부터 살펴본다.

『경국대전』에는 몇 가지 형사범죄에 대해 범죄자뿐 아니라 가족을 연좌시키는 연좌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를 크게 家族爲奴刑, 全家徙邊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족을 노비로 삼는 家族爲奴刑의 조문을 보면, 1) 印信을 위조한 자는 處斬하고 그의 妻子를 여러 읍의 노비로 永屬하거나,[15] 2) 徙民된 자로서 도망간 경우 妻子를 殘驛의 奴婢로 삼거나,[16] 3) 强盜의 妻子를 소재관의 노비로 永屬시키는[17] 규정 등으로 이들 사건의 경우 연좌의 범위는 妻子에 그쳤다.

다음으로 가족 전체를 변경 지역에 유배 보내는 全家徙邊刑은 변경지역에 대한 徙民政策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1) 公賤을 과실로 죽게 한 아전과 그 일족,[18] 2) 강도의 窩主 가족[19]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전체적으로 家族爲奴刑, 全家徙邊刑 등 『경국대전』의 신설 규정은 실제 연좌되어 처형되는 적용 대상이 처자, 혹은 가족 등으로 범위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고, 모반대역의 경우처럼 연좌된 일족의 일부를 사형에 처하는 대신 모두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내용이 조선 초기 연좌제에 관한 법 규정의 기본 골격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조선초기에는 신분질서의 유지 내지 변경 지역에 대한 徙民 등 정책적 고려가 작용되어 일부 형사범의 처자 혹은 일가족에 대한 연좌 규정이 일부 마련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대명률』의 연좌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조선후기에 와서는 연좌제에 대한 법규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연좌제의 기본 골격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몇 가지 새로운 내용도 일부 감지된다. 첫째, 특정 사건에 연루된 형사범죄인의 가족을 노비로 삼는 연좌 조문이 일부 추가

祖, 父, 己 등 3세대에 걸친 친족이라 전제하고, 삼족이 포괄하는 범위는 위로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백부·숙부 등 祖族, 옆으로 형제와 그 소생인 조카 등을 포함한 父族, 아래로는 아들과 손자 등을 의미하는 己族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좌된다는 것이 곧 三族을 멸하는 법인데, 근래 사람들이 이를 잘 알지 못 한다고 말하고 있다(『牧民心書』 刑典 「恤囚」 참조). 이처럼 연좌 범위는 祖父에서 孫子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있기는 하였지만 사형에 처해지는 자들이 제한되어 있었고, 외가나 처가 식구들은 연좌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법규에 연좌 범위가 무한정 넓은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15) 『經國大典』 권5, 형전 「僞造」
16) 『經國大典』 권5, 형전 「逃亡」
17) 『經國大典』 권5, 형전 「賊盜」
18) 『經國大典』 권5, 형전 「公賤」
19) 『經國大典』 권5, 형전 「賊盜」

되었다. 야간에 무리를 모아 인명을 살상한 자의 妻子를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20] 부모와 남편에 대한 시해, 노비의 주인 시해, 官奴의 官長 시해와 같은 綱常罪人은 사형에 처한 후 그 妻子는 노비로 삼고, 이에 더하여 범인이 살던 해당 고을의 격을 강등시키고 수령을 파직시키도록 하는 규정[21] 등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상하 신분질서가 엄격한 조선에서 윗사람을 시해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가족 뿐 아니라 고을 수령까지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둘째, 모반대역죄의 연좌에 대한 特例도 마련되었다. 즉 같은 모반대역이라 할지라도 거병한 逆魁의 경우에는 그 형제, 처첩까지도 연좌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22] 『대명률』에는 모반대역을 범한 자의 16세 이상 父子만이 사형을 당했으나, 『속대전』에서 병력을 동원한 경우 연좌하여 사형에 처하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 조항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영조 때 이인좌의 난(1728)과 관련이 있다.[23]

셋째, 위의 첫째, 둘째 규정과 다르게 연좌제의 약화 흐름도 감지되는데, 전가사변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조선초기부터 시행된 전가사변은 평천민, 향리 등을 주 대상으로 하여 『경국대전』 이후에 罪目이 번다해지고 처벌 사례도 크게 늘어났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전가사변형의 가혹함이 인정되어 숙종대에 관련 법조문이 개정되었고 마침내 영조는 전가사변 형률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제 전가사변은 『續大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徒·流刑으로 바뀌게 되었다.[24]

전체적으로 법규를 일람해볼 때 가혹한 연좌의 한 형태였던 전가사변이 완전히 사라진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일반 형사범에 대한 연좌는 완화되는 흐름이었다고 알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에 정치범에 대한 연좌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적어도 법전 상에서 볼 때 모반대역의 연좌제 규정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정치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무겁게 처벌하였음을 알려준다. 아

---

20) 『續大典』 권5, 형전 「賊盜」

21) 『續大典』 권5, 刑典 「推斷」 '綱常罪人(弑父母夫 奴弑主 官奴弑官長者) 結案正法後 妻子女爲奴 破家瀦澤 降其邑號 罷其守令(從時居邑)'

22) 『續大典』 권5, 刑典 「推斷」

23) 이에 대해서는 조지만, 2007 『조선시대의 형사법 : 대명률과 국전』, 경인문화사, 282-284면 참조.

24) 전가사변 형벌은 북방 먼 지역으로 죄인을 유폐시키는 유배형의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죄인의 가족들까지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연좌형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조선시대에 시행된 全家徙邊 정책의 법제사적 고찰은 金池洙, 1987 「朝鮮朝 全家徙邊律에 관한 硏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에 상세하다.

울러 정쟁의 와중에서 반대 정치세력에 대한 보복의 차원에서 연좌제가 남용될 여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실제 조선 정치사에서 연좌제는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정치범에 대한 연좌제 적용의 실제

지금까지 법전에 실린 연좌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의 실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조선에서 연좌제가 어떻게 적용되었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일부 실록 기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실록 기사가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후기 영조부터 고종 때까지의 경우 연좌제 적용의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연좌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선 15-17세기까지는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연좌제의 실제 적용 사례, 내용 등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18세기 영조대 이후 고종대까지의 경우는 연좌제 적용 기록을 풍부히 담고 있는 『연좌안』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연좌제 적용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실록 기록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법 적용 과정, 연좌 대상자의 구체적 처벌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아 이를 모두 정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먼저 당대인들의 연좌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살펴본다.

당대인의 연좌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은 다음 태종대와 세조대 관리들의 언급이 잘 보여준다. 태종 16년 대역죄인의 처벌과 관련하여 사간원에서는 연좌제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大逆 죄인의 경우 天地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죄가 친척에까지 미치는 것은 경계를 보이려는 까닭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25]

아울러 세조가 자신의 조카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즉위 초 자신의

25)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2월 무자.

즉위에 반대한 세력들을 역모로 처단하는 와중에서, 대사헌 신석조와 좌간 이종검은 상소를 올려 앞서 태종대의 사간원의 지적과 유사한 논리로 대역죄인의 당사자만을 죽이면 후세 사람에게 징계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亂臣을 죽이고 逆賊을 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黨與를 다스린다'는 『春秋』의 논리도 동원하였다.[26]

이는 왕조사회 최고의 통치자인 왕권에 대한 도전은 국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가까운 혈연 가족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 및 통제를 위해 연좌제가 필요했다는 논리이다. 이는 법사학자인 서일교가 지적하듯이 연좌제가 위협주의, 예방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서,[27] 당대 신료들의 '忠君' 관념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논리에 따라 연좌제는 조선시대 각종 정치사건, 역모에서 범죄자의 가족들에 대해 적용되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연좌제가 시행된 각종 정치 사건의 처리 사례를 실록에서 추적해보면 다음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법에 정한 규정상의 연좌 범위를 넘어서서 연좌제가 남용된 사례들이 발견된다. 이는 기존의 연좌제 관련 검토에서 자주 언급되던 내용으로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무래도 연산군대를 들 수 있는데, 과도한 연좌 적용은 물론 왕정의 난맥이 극단적인 정치적 유혈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컨대, 1504년(연산군 10) 발생한 甲子士禍는 매우 혹독한 연좌 처벌이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주지하듯이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자신의 생모이자 성종비였던 尹氏의 폐비 조치에 대한 원한을 품고 그에 관련된 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사건이었다.

갑자사화에서 과도한 연좌 처벌 대상이 된 인물 중에는 李世佐와 성종의 후궁 嚴氏·鄭氏 등이 있었다. 성종 때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운반했던 李世左의 경우 당초 거제에 유배시켰다가 賜死의 명령을 내려 죽게 하였으며, 그의 네 아들과 동생은 물론 연좌 대상이 아닌 사위들까지 모두 極邊에 유배형에 처했다가, 결국에는 아들과 동생을 處斬하였다.[28]

---

26)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7월 기묘.

27) 서일교, 앞의 책(1968), 107면.

28) 『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3월 경진 ; 연산군 10년 5월 계유·을미. 한편, 연산군 10년 5월 15일자 기사에 따르면 연산군은 李克均, 李世佐, 尹弼商, 成俊, 韓致亨, 魚世謙 등을 처형하면서 이들의 同姓 8촌, 이성異姓 4촌의 자녀들은 한 명도 서울에 남겨두지 말고 모두 지방으로 귀양보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연산군 스스로 이런 조치가 법에 정한 연좌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관철하였다(『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5월 갑진).

이와 동시에 어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연산군은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를 撲殺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들, 부모, 동생을 決杖하여 極邊에 안치하였다. 당시 엄씨, 정씨 친인척에 대한 연좌 조치는 80세가 넘는 이들의 부친과 출가한 자매들이 포함되었으며 율문의 규정을 넘어서면서까지 연좌시킨 것으로 확인된다.[29]

연산군대의 사정은 사실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전후에도 중요한 정치적 사건 때 간혹 연좌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사례를 꼽는다면 연산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중종 즉위년에 있었다. 즉 중종 즉위년 9월에 연산군대의 重臣 愼守勤 일파를 誅殺하면서 신수근의 일족들을 연좌시켜 遠方으로 付處하였는데, 그 범위가 법적 규정을 많이 넘어서는 동성 4-5촌, 이성 3-4촌에까지 미쳤다는 기록이 있다.[30]

다음, 조선시대 정치범에 대한 연좌제 적용의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왕대별로 연좌 적용의 대상과 범위에 차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입법의 주체이자 당대 최고의 재판관인 국왕의 판단에 따라 연좌제가 일부 자의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관련 사례들 중 어린아이의 연좌에 관한 것을 예로 들면 태종 6년(1406)에는 반역죄를 범한 文可學 등을 처형하면서 그의 젖먹이 아들도 絞刑에 처하고 있는 반면,[31] 세조 2년(1456) 대역죄를 범한 朴遂良 등에게는 당사자는 斬刑에 처하고 家産을 적몰하였지만, 자녀들은 官奴로 삼는데 그치고 나머지 연좌자들은 연좌를 면제시켜 주었다.[32]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도 왕대별로 그리고 사안별로 연좌 범위, 연좌 처벌의 내용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3]

---

29) 『연산군일기』 권52, 연산군 10년 3월 신사 ; 연산군 10년 3월 정해 · 무자

30) 『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9월 기묘.

31) 『태종실록』 권12, 태종 6년 12월 경자.

32)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4월 경자.

33) 연좌의 禍가 죄인 며느리의 뱃속 아기, 즉 죄인의 손자에까지 미칠 뻔한 사연으로 세조대 朴彭年 집안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燃藜室記述』에 실려 있어 소개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은 세조 2년 단종복위를 도모하다가 옥중에서 고문으로 죽고 車裂당했는데, 이 때 박팽년 집안은 아버지와 아우 넷, 아들 朴憲 · 朴珣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어미와 처첩, 아들의 처첩 등은 노비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박팽년이 죽을 당시 아들 박순의 아내 이씨는 임신 중이었는데, 고향인 대구로 귀양을 가서 官婢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만에 하나 그녀가 아들을 낳거든 죽이라고 명령하였는데,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어 죽게 될 판국이었다. 『대명률』에는 분명 15세 이하의 아들은 연좌 처형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었지만, 박팽년 등 사육신 집안에는 법의 규정을 넘어서서 뱃속의 손자까지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박씨 집안의 종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낳은 딸이 있어 서로 자식을 바꾸어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燃藜室記述』 권4, 端宗朝故事本末 殉難諸臣 참조). 이 때 화를 면한 박팽년의 손자는 성종 때 자수하여 사면을 받았으니 그가 바로 朴壹珊이며, 그가 정착한 마을이 대구 달성 하빈면의 묘골이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자칫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박일산이 구사일

사위에 관한 연좌도 종종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생겼다. 앞서 본 바대로 원래 『대명률』에서는 연좌가 사위에까지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다. 즉, 태종 9년(1409) 李茂의 사위 孟歸美란 인물에 대해 사헌부의 연좌 처벌 요청에도 불구하고 연좌를 면해주었던 반면,[34] 그와 대조적으로 세조 권력하에서 김종서의 심복이라는 이유로 파직 당하자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李澄玉에 대해서는 그의 사위도 極邊에 安置시킨 조치도 있었다.[35]

또한 당초 법에는 출가한 딸과 사위는 연좌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었지만, 사위와 함께 출가녀의 문제도 연좌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곤 하였다. 예컨대, 출가녀의 경우 연좌에서 제외시켜주는 원칙이 광해군대에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36] 이에 현종대에 법대로 연좌시키지 말 것을 재천명하였으나[37] 이후에도 출가녀 연좌 적용은 논란이 되었다. 그래서 역적 집안의 딸과 결혼한 사위 집안에서 자신들까지 화를 입는 것을 피하기 위해 逆家의 친딸과 이혼하는 것이 숙종대 당시 관례로 자리잡을 정도였다.[38]

이상 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연좌 적용의 실례를 보면, 연좌제가 남용되거나 왕대별로 적용 기준을 달리하는 등 몇몇 사건에서 무원칙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선입견, 즉 조선시대 연좌형의 족쇄가 미치는 범위가 법규를 넘어 확대되거나 가혹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사례들이다. 그런데 과연 연좌제가 남용되기만 하였던 것이었을까? 필자는 관련 기록을 좀 더 조사해보면 연좌제의 폐해에 대한 우려, 제어 장치 마련의 흐름도 파악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연좌제 적용의 완화 흐름, 이것을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의 세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조치들은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반대역과 같은 대역죄인 외에는 가능한 연좌 처벌을 제한하고자 하거나, 어린아이에 대한 연좌 면제 조치 등을 정식화하는 등 연좌제 제한을 위한 조치, 규정이 마련되고 있었다. 성종 5년(1474) 왕릉의 하나인 智陵을 불태운 죄수에 대

생함으로써 그는 묘골의 순천박씨 입향조가 되었다고 하니, 지금도 이곳에 순천박씨 집성촌을 알리는 건물과 유적이 곳곳에 전해지고 있다.

34)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계묘.

35) 『단종실록』 권9, 단종 1년 11월 갑인.

36) 『광해군일기』 권66, 광해군 5년 5월 정해.

37) 『增補文獻備考』 권128, 刑考2 刑制2 현종 9년(1668) 기사.

38) 『숙종실록』 권51, 숙종 38년 4월 갑인. 당시 禮曹에서는 국왕 숙종에게 "逆家의 친딸과 이혼하는 일은 비록 법 밖이라 하지만, 이미 전해 오는 관례가 되어 쉽사리 변경하거나 고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해 본인은 처형하지만 연좌는 면제시켜 주었으며,[39] 이 같은 조치는 숙종 30년(1704)에도 확인되는데 孝陵에 불을 낸 능의 奴僕에게도 가족 연좌는 면해주었다.[40] 그리고 인조 때에는 3세 이하의 유아는 연좌를 면해주는 것을 정식으로 삼는 조치를 입법하였다.[41]

다음으로 자백하지 않고 죽은 죄수에게는 그 가족들을 연좌제로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혐의만으로 범죄인 가족을 연좌시키는 불합리한 조치를 금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가 언제부터 공식화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략 중종 연간부터는 관례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2] 또한 조선후기 정치범 가족 등에 대해 뒤늦게 연좌율을 追施하여 처벌하는 조치도 금지시켰다. 이는 후술하듯이 영조집권 중반기 소론 정치인들의 역모 진압과정에서 시행했던 가혹한 연좌 처벌을 반성하고 추후 이같은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영조가 1759년(영조 35) 정식화하였고, 정조 즉위 초에 재차 천명되어 이후 법전에도 실리게 되었다.[43]

한편, 殿牌作變 죄인의 가족에 대한 연좌 처벌도 없앴다. 조선시대 관아의 客舍에 왕의 초상을 대신하여 '殿'이라 새긴 전패를 봉안하였는데, 그 상징성 때문에 이를 훼손하거나 모독하는 경우 조선에서 대역죄로 다스렸다. 즉, 전패작변을 일으킨 죄인은 의금부로 이송하여 『대명률』의 '謀反大逆' 조문을 적용하여 처형하고 가족들도 연좌 처벌하였다.

그러다가 19세기 순조 때 와서 전패작변 죄인을 대역죄로 처단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자식까지 연좌, 즉 孥戮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1822년(순조 22)에 순조는 수교를 통해 이런 사건을 처벌할 때 가족들에 대한 연좌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정식화하였다.[44] 이 규정은 나중에 『대전회통』에도 실리게 된다.[4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조선시대 역모 등 다양한 정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

39)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계미.

40) 『숙종실록』 권39, 숙종 30년 1월 갑자.

41) 『인조실록』 권8, 인조 3년 1월 기사.

42) 『중종실록』 권74, 중종 28년 5월 무진.

43) 『大典通編』 권5, 刑典 「推斷」 "罪人未結案而傳旨正法者 身已死而追施逆律者 非軍法梟示者 並禁除(英宗己卯)" ; 『日省錄』 정조 즉위년 9월 1일. 영조대 나주괘서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미 지난 사건의 관련자들을 이때 와서 다시 역적으로 규정짓고 해당 가족들을 연좌시켜 처단하는 조치가 잠시 취해진 적이 있다. 이같은 逆律의 追施에 관한 내용은 심재우, 2010 「영조대 정치범 처벌을 통해 본 법과 정치 : 을해옥사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21호 참조.

44) 전패작변 죄인의 가족에 대한 연좌 금지 조치에 관한 내용은 조윤선, 2006 「조선후기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법사학연구』 34, 54-57면에 자세하다.

45) 『大典會通』 권5, 刑典 「推斷」 "殿牌作變, 事關逆節外, 勿爲逮鞫, 本處不待時斬, 孥戮勿施, 純祖壬午"

서 때로 국왕과 신료들의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연좌형이 가혹하게 적용되기도 하였지만, 연좌형의 제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작업도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연좌제에 대한 기존의 인식·편견이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46] 따라서 중요한 것은 중국 법률을 수용하였으면서도 중국과는 일정한 차이를 둔 연좌제의 조선적 변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내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연좌안』 분석을 통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4. 『연좌안』을 통해 본 연좌의 실상

앞서 실록에서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의 사례 등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았는데, 이제부터는 『연좌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기로 한다. 조선후기 중요 정치범, 강상범의 연좌 적용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는 앞서 서두에서 밝힌 장서각과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 『緣坐案』이 있다. 두 종의 『연좌안』을 대조해 보면 규장각 소장 『연좌안』은 19세기에 작성된 필사본이며, 장서각 소장본은 이 규장각 본을 바탕으로 일제시대 李王職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본은 훼손되거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이 글에서는 장서각 소장 『연좌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47]

먼저 『연좌안』의 특징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연좌안』에 수록된 사건 범위는 영조대를 시작으로 하여 고종대까지 걸쳐 있으며, 영조대의 기록이 거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다. 이 책의 작성 주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정치사건 등 중범죄를 맡아 처리하던 義禁府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록된 사건은 주로 逆謀·反亂,

46) 한편, 왕위 교체 등의 와중에서 전왕 대에 연좌되어 유배에 처한 죄수들이 解配되는 경우가 많았던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록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예컨대 중종이 즉위하면서 무오, 갑자사화에 연좌된 죄수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거나(『중종실록』 권1, 중종 1년 10월 임자), 명종이 즉위하면서 亂逆과 관련되어 定屬된 자들을 모두 석방하는(『명종실록』 권1, 명종 즉위년 7월 신사) 등의 사면 조치가 그 한 예이다. 이를 연좌형의 완화 흐름과 직접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조치들이 연좌제에 의한 처벌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

47) 장서각 소장본의 경우도 한계가 있다. 즉, 장서각 소장 『연좌안』의 경우 규장각 소장본 4책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책의 순서가 뒤바뀌었고 3책으로 묶이는 등 혼란이 있다. 또한 규장각 본과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규장각 소장본보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정서한 장서각 소장본이 그런 점에서 분석에 효과적이었다.

殿牌作變 등 國事犯에 해당되는 정치범이 대부분이고, 간혹 부인의 남편 시해 사건 등 綱常犯도 있다.

『연좌안』의 기재 형식을 보면 범죄인의 성명, 죄명, 처형 일자 등을 먼저 적은 후에 동 죄인의 가족·친족으로서 연좌된 인물들의 연좌 내역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역은 먼저 연좌인들 가운데 처형된 자들의 경우 성명과 처형일자 등을, 유배되거나 노비로 정속된 자들의 경우는 流配地(定屬地) 군현과 섬의 명칭 등을 적었으며, 이밖에 죄인과의 관계, 연좌인의 사망이나 移配 일자, 나이, 추후 減刑 받은 경우 그 사유 등을 작은 글씨로 기록한 경우도 많았다. 연좌된 인물들의 처벌내용은 주로 爲奴·爲婢·安置 등이며, 復權되었을 때는 죄인의 성명 아래 복권된 날짜·사유를 적어 넣는 등 연좌 이후의 조처 등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연좌안』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보다 훨씬 구체적인 연좌인의 성명과 죄인과의 관계, 사후 처리 과정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연좌안』의 영조대 기록의 경우 1746년 이후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 약점이다. 영조 후반기의 정국 동향은 1755년 을해옥사를 비롯하여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고, 역모 관련자들에 대한 연좌 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시기라는 점에서 기록의 누락이 아쉽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18, 19세기 연좌 처벌의 내용을 이 자료만큼 상세히 보여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자료임에 분명하다.

이제 『연좌안』에 수록된 연좌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첫째, 영조대, 둘째, 정조~고종대 두 시기로 구분하여 수록된 사건 중 중요한 사건을 뽑아서 살펴보기로 한다.[48] 다음 〈표 1〉은 영조대 기록 일부를 표로 제시한 것이다.

48) 『연좌안』 수록 내용이 워낙 방대하며 때로는 기재 형식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징적인 사건만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전수 조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18~19세기 연좌 처벌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피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연좌안』(奎 15146)에 수록된 각 책별 시기는 1728-1746년(제1책), 1776-1811년(제2책), 1812-1881년(제3책), 1884-1886년(제4책)이다.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소개하면 영조대 이인좌의 난(1728년), 정조대의 時·辟간의 정쟁, 申享夏·白天湜 모반(1782년), 순조대의 辛酉邪獄, 홍경래의 난, 헌종대의 李遠德·閔晋鏞 사건(1844년), 철종대의 蔡喜載·金應道 등의 모반(1851년), 고종대의 병인박해(1866년), 광양민란, 이필제 난, 갑신정변 관련자 처형 등이다. 정치범 외에도 陵園의 방화범, 弑父·弑母 등 패륜살인범에 관한 내용도 일부 등장한다.

〈표 1〉『연좌안』에 수록된 영조대 주요 연좌인 기록

연도	죄인	연좌인				
		유배지(정속지)	관계	성명	연좌내용	비고
1724	睦虎龍	전라도 낙안군	妻	大阿只	爲婢	
		전라도 낙안군	子	德福	爲奴	을해(1755) 3월 處絞
		전라도 낙안군	女	太任	爲婢	
		전라도 낙안군	女	今年生	爲婢	경술(1730) 2월 物故
		전라도 보성군	子	福成	爲奴	임자(1732) 3월 處絞
		전라도 보성군	子	德成	爲奴	을해(1755) 3월 處絞
		전라도 장흥현	叔	天禧	安置	임자(1732) 7월 物故
		경상도 고성현	兄	時龍	爲奴	무신(1728) 3월 處斬
		경상도 곤양부	姪	晋興	安置	
		경상도 하동부	姪	震福	安置	
		제주목 대정현	姪	贊興	安置	갑진(1724) 12월 晋州牧爲奴, 갑인(1734) 絶島定配
1725	金一鏡	전라도 해남현	子	正海	減死爲奴	22세. 을사(1725) 11월 依律處絞
		전라도 강진현	子	寧海	減死爲奴	18세. 무신(1728) 3월 依律處斬
		경상도 고성현	子	允興	爲奴	10세. 을해(1755) 3월 處絞
		경상도 하동부	子	喜雄	爲奴	3세. 병인(1746) 1월 物故
		경상도 상주목	妻	龍海	爲婢	
		경상도 상주목	女	承叔	爲婢	을축(1745) 11월 物故
		경상도 하동부	妾	墨行	爲婢	기미(1739) 10월 物故
		경상도 하동부	女	楊叔	爲婢	신유(1741) 9월 物故
		경상도 하동부	女	果叔	爲婢	경신(1740) 1월 物故
		경상도 하동부	女	昆叔	爲婢	임술(1742) 2월 物故
		경상도 하동부	女		爲婢	
		경상도 하동부	女	今年生	爲婢	
		전라도 해남현	子婦	八梅	爲婢	
1725	李天海	평안도 벽동군	妻	連伊	爲婢	
		평안도 벽동군	女	玉今	爲婢	경술(1730) 7월 物故
		평안도 벽동군	女	今年生	爲婢	
		함경도 무산부	弟	萬海	爲奴	
		함경도 온성부	叔	再興	爲奴	
		함경도 갑산부	叔	三興	爲奴	임자(1732) 6월 物故
1725	錫山 (長陵放火罪人)	전라도 진산군	妻	壼分	爲婢	
		전라도 진산군	子	今年生	爲奴	
1728	朴弼夢	경상도 거제부	子婦	任伊	爲婢	무신(1728) 4월 物故
		경상도 거제부	孫女	完惠	爲婢	
		경상도 거제부	孫子	今年生	爲奴	경술(1730) 5월 物故

		전라도 진도군	子婦	加應只	爲婢	무신(1728) 5월 物故
		평안도 철산부	姪子	師讓	安置	을축(1745) 濟州旌義로 移配
1728	李麟佐	함경도 온성부	子	中明	爲奴	年未滿. 무신(1728) 5월 旌義縣 移配, 경술(1730) 6월 承傳處絞
		함경도 온성부	子	仁明	爲奴	年未滿. 무신(1728) 5월 旌義縣 移配
		함경도 회령부	子	文明	爲奴	年未滿. 무신(1728) 5월 大靜懸 移配
		함경도 회령부	子	化明	爲奴	年未滿. 무신(1728) 5월 大靜懸 移配, 기유(1729) 1월 物故
		전라도 제주목	弟	夔佐	爲奴	
		전라도 홍양현 나로도	叔	弘仁	安置	
		전라도 제주목	侄	現明	安置	
		전라도 제주목	侄	慶明	安置	계축(1733) 8월 物故
1730	閔黯	제주목 정의현	孫	乞萬	爲奴	신해(1731) 12월 덕천군 爲奴. 갑인(1734) 3월 도망, 체포 후 嚴刑3次 絶島爲奴
1736	崔夏徵 (殿牌偸出作變罪人)	경상도 함창현	母	再月	爲婢	
		경상도 함창현	兄	就徵	爲奴	정사(1737) 11월 妻의 擊錚으로 석방
		경상도 함창현	弟	天徵	爲奴	
		경상도 함창현	侄子	淑石	安置	정사(1737) 11월 妻의 擊錚으로 석방
		경상도 문경현	妻	丁今	爲婢	

〈표 1〉에서 제시한 것들은 크게 모반대역 사건, 왕릉방화·전패작변과 같은 기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모반대역 사건은 반영조, 반노론 역모사건들이 주를 이루는데, 경종대 신임옥사를 일으켜 노론계 관리들을 제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인물인 목호룡·김일경, 영조의 능행길에 국왕 면전에서 이복형인 경종 독살설을 주장한 이천해, 1728년 전국적인 거병 역모로 번진 이인좌의 난 관련자들에 관한 기록들이다. 이밖에 기타 사건으로는 錫山 등이 1725년 長陵 주변의 소나무를 벌목하다가 잡혀서 유배에 처해진 것에 원한을 품고 陵卒에게 복수하기 위해 장릉에 불을 지른 사건,[49] 충청도 忠原의 倉吏인 최하징이란 인물이 수령을 몰아내기 위해 저지른 殿牌作變 사건[50] 등이다.

주지하듯이 조선후기 정치사의 흐름은 숙종대 환국을 통해 一黨 專制가 반복되고 동시에 반대 붕당에 대한 대대적인 살육이 전개되면서 붕당정치가 파국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경종, 영조의 즉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각 정치세력이 군주를 선택하는 이른바 '擇君'의 상황이 초래되면서 영조는 자파의 黨

49) 자세한 내용은 『영조실록』 권8, 영조 1년 11월 병오 기사 참조.
50) 『영조실록』 권42, 영조 12년 11월 갑오.

論만을 일삼는 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왕정체제의 강화를 통해 蕩平을 추진하였던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51]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영조정권에 반기를 든 역모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은 〈표 1〉의 내용에서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통해 이 시기 대역 죄인의 가족에 대해 연좌 처벌할 경우 『대명률』의 법 규정이 상당 부분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점을 우선 알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연산군대를 비롯하여 몇몇 왕대에서 연좌 대상이 확대되거나 규정 이상으로 처벌이 남용되었던 예를 소개하였지만, 이는 『연좌안』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는 오히려 예외적인 사례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연좌안』 기록은 연좌제가 때로 『대명률』 규정보다 완화된 형태로, 또한 일부 규정을 조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원래 『대명률』의 모반대역죄의 연좌 규정을 다시 상기시키면 범인의 16세 이상 父子는 絞刑, 15세 이하와 母女·妻妾·祖孫·兄弟·姉妹 및 아들의 妻妾 등은 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伯叔父와 형제의 아들도 모두 流三千里 安置刑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첫째, 연좌된 자들 가운데 처형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다. 즉, 〈표 1〉에서 김일경의 첫째 아들 正海가 減死爲奴되었다가 그 해 바로 처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명률』의 규정처럼 父·子가 연좌되어 처형된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둘째, 『대명률』 규정에는 연좌인의 직계가족과 형제들을 功臣의 집에 노비로 삼도록 하였는데, 조선에서는 대개 지방 관아의 노비로 삼았다.

셋째, 박필몽의 사례를 제외한다면 『대명률』의 연좌 범위가 죄인의 5대에 걸쳐 있는 것과 달리 祖孫, 姉妹 등에까지 미치는 경우도 드물었다. 전체적으로 연좌처벌의 수위와 연좌 범위가 법적 규정보다 가벼웠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넷째, 연좌인들을 奴婢로 삼거나 安置시키기 위해 지방에 보낼 때 가족들을 완전히 해체하기 보다는, 대개 동거가족들은 같은 지역, 또는 적어도 인근 고을로 보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1724년 목호룡의 연좌된 처와 아들 셋, 딸 둘 등 여섯 식구를 모두 전라도 낙안군으로 정속시킨 것이 그 한 예이다.[52]

---

51) 영, 정조대의 정국동향과 정치운영에 대해서는 박광용, 1994 『조선후기 탕평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에 상세하다.

52) 『연좌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연좌인 禹桂壬과 세 자녀의 경우도 처자식이 한 고을로 정속된 사례이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후기 경상도 단성 지역의 호적대장에 이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들은 1728년 이인좌의 난에 가담한 李萬東의 처자식들이다. 이만동은 무신난 당시

특히 『연좌안』 속 사례 가운데 殿牌作變 죄인 최하징 가족들의 경우는 비교적 다른 연좌인에 비해 운이 좋은 경우이다. 1736년 忠原縣의 倉吏였던 그는 관곡을 횡령하고는 발각되지 않으려고 수령 축출 계획을 세워 몰래 객사의 殿牌를 가져다가 돼지우리에 던져 버렸다가 참형에 처해졌다.[53] 〈표 1〉에 따르면 이 일로 인해 그의 어머니, 형, 동생, 처 등 모두 4인이 경상도 함창현의 노비가 되었고, 조카 1명도 같은 함창현에 安置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가족 모두 같은 고을로 보내졌다는 점, 게다가 이듬해 형과 조카는 최하징의 처 丁今의 擊錚을 통해 석방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연좌에 속한다.

위와 같은 연좌 범위, 처벌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 시기 죄인의 일족을 연좌 처벌할 때 법전 규정이 의식적으로 적용되었고, 한편으로는 규정보다 완화된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736년 최하징의 사례처럼 연좌된 자들이 뒤에 석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면 조치로 인한 연좌인들의 解配는 연좌 처벌의 종신형적 성격을 퇴색시키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연좌안』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영조대 연좌 처벌의 내용을 보면 연좌제의 남용 사례도 발견된다. 즉, 처음에는 처형해야할 연좌인들을 減刑하여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일어난 역모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추후 처형한 예가 그것이다.[54] 〈표 1〉에서 보듯이 목호룡과 김일경의 아들이 연좌 당시에는 죽음을 면했다가 무신난(1728년), 을해옥사(1755년) 등에 연루되어 처형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이는 영조대 긴박한 정국 동향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사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영조대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다음 〈표 2〉는 『연좌안』에서 정조대부터 고종대까지 중요 연좌 기록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鎭岑縣監으로 재직 중에 청주의 賊兵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로 압송되어 鞫廳에서 형장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 때 부인 우계임과 어린 세 자녀는 연좌되어 이만동 사망 직후 단성으로 정배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계임은 이곳에서 官婢로 등재되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재우, 2001 「조선후기 丹城 지역 定配人의 존재 양태」 『한국학보』 102호, 107-111면 참조.

53) 『영조실록』 권42, 영조 12년 11월 갑오

54) 영조대 무신난, 을해옥사 등을 거치면서 연좌제를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조윤선, 2009 「영조대 남형·혹형 폐지 과정의 실태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조선시대사학보』 48 ; 심재우, 앞의 논문(2010) 참조.

〈표 2〉『연좌안』에 수록된 정조-고종대 주요 연좌인 기록

연도	죄인	연좌인				
		유배지(정속지)	관계	성명	연좌내용	비고
1776	李德師 (大逆不道誣上)	전라도 흑산도	妻	喜慧	爲婢	39세. 신유(1801) 11월 物故
		제주목 대정현	子	吉得	爲奴	13세. 을묘(1795) 2월 物故
		전라도 영암군	弟	德履	爲婢	52세. 을묘(1795) 10월 移配. 정사(1797) 9월 物故
		경상도 거제부	子婦	慧伊	爲婢	27세. 병신(1776) 5월 物故
		경상도 남해현	侄	網培	安置	17세.
		함경도 경흥부	侄	鵬培	安置	36세. 임자(1792) 4월 物故
		함경도 무산부	侄	馨培	安置	29세.
		전라도 강진현	侄	畢靈	安置	12세.
		경상도 거제부	孫	龍甲	爲奴	3세. 무술(1778) 8월 物故
1776	柳翰申 (誣上不道)	함경도 부령부	父	文輔	減死定配	61세.
		전라도 광양현	庶母	才喜	爲婢	계유(1813) 1월 物故. 을묘(1795) 10월 및 정묘(1807) 12월 移配
		경상도 남해현	妻	應伊	爲婢	39세. 계묘(1783) 6월 移配, 경술(1790) 7월 南海, 병진(1796) 2월 物故
		경상도 남해현	女	戊惠	爲婢	19세. 을해(1815) 3월 物故
		함경도 종성부	妾	阿只連	爲婢	30세.
		함경부 회령부	庶女	發嗒德	爲婢	今年生. 병신(1776) 11월 物故
		함경도 경원부	弟	宅申	爲奴	35세. 병신(1776) 6월 物故
1782	白天湜 (大逆不道)	전라도 진도군	妻	大阿只	爲婢	50세. 경술(1790) 7월 석방
		전라도 흥양현 녹도	兄	天有	爲奴	50세. 계묘(1783) 6월 金甲島 移配, 갑진(1784) 3월 移配, 10월 物故
		전라도 영광군 임자도	兄	天渙	爲奴	45세. 경술(1790) 7월 석방
		제주목 대정현	侄	汶赫	安置	25세.
		전라도 흥양현 사도	侄	汶覺	安置	24세. 경술(1790) 7월 석방
		제주목 정의현	侄	汶倜	安置	23세. 갑진(1784) 3월 物故
		함경도 무산부	侄	汶喆	安置	16세. 경술(1790) 7월 석방
		경상도 단성현	侄	古正山	安置	5세. 갑진(1784) 3월 移配, 무신(1788) 6월 物故
		경상도 삼가현	侄	億之軍	安置	4세.
		경상도 남해현	叔	士正	安置	65세. 을사(1785) 3월 物故
1784	金夏材 (大逆不道)	전라도 진도군	子	夢伊	免絞爲奴	6세.
		경상도 남해현	子	仁伊	免絞爲奴	3세. 병오(1786) 11월 物故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	妻	任伊	爲婢	33세. 갑진(1784) 12월 處絞

		전라도 강진현	女	桂完	爲婢	13세. 을해(1815) 2월 物故
		함경도 길주목	庶母	夢月	爲婢	계해(1803) 2월 物故
		평안도 위원군	庶弟	英材	爲奴	
		경상도 거제부	侄	斗恭	安置	을사(1785) 4월 大逆不道正刑
1801	黃嗣永 (大逆不道)	경상도 거제부	母	允惠	爲婢	을해(1815) 3월 物故
		제주목 대정현	妻	命連	爲婢	무술(1838) 2월 物故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	子	景漢	爲奴	2세. 기미(1859) 6월 物故
1801	李好春	함경도 명천부	妻	岳只	爲婢	41세.
		함경도 경원부	兄	漢春	爲奴	65세. 정축(1817) 8월 物故
		제주목 대정현	子	睦駿	免絞爲奴	11세.
		전라도 흥양현 여도진	子	烈駿	免絞爲奴	3세. 임신(1812) 9월 物故
		평안도 곽산군	女	玉伊	爲婢	16세.
		함경도 이원현	女	七伊	爲婢	1세. 갑자(1804) 7월 物故
		평안도 벽동군	侄	孟駿	安置	16세.
1812	洪景來 (擧兵逆魁)		妻	崔女	處斬	
			弟	鼎來	處斬	
		제주목 대정현	子	儉崇	免絞爲奴	11세. 임신(1812) 6월 物故
		전라도 나주목 흑산도	侄	志默	安置	流三千里安置, 임신(1812) 6월 物故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	侄	蒯亡	安置	流三千里安置, 임술(1812) 5-7월사이 物故[55]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	侄	大默	安置	流三千里安置, 임신(1812) 5-7월사이 物故
1812	禹君則 (擧兵逆魁)		妻	鄭女	處斬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	子	相洛	免絞爲奴	9세. 임신(1812) 5월 物故
1866	南鍾三 (謀叛不道)	경상도 창녕현	妻	李召史	爲婢	을해(1875) 1월 物故
		경상도 창녕현	女		爲婢	9세. 갑오(1894) 12월 석방
		경상도 창녕현	女		爲婢	7세. 갑오(1894) 12월 석방
		경상도 창녕현	子		爲奴	4세. 갑오(1894) 12월 석방
1866	朴卜蟾 (弑父罪人)					연좌인 없음

55)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에 안치된 홍경래의 조카 蒯亡의 物故 연대는 다소 불분명하다. 장서각 『연좌안』에는 홍경래 가족 연좌 기록이 두 군데에 등장하는데, 한 곳에서는 그가 壬申年인 1812년에 사망한 것으로, 다른 한 곳에서는 여러 도에서 올린 보고서에 의거하여 壬戌年인 1862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는 함께 유배된 홍경래의 다른 조카들이 1812년에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보아 전자, 즉 1812년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壬戌年은 壬申年의 오자일 것이다.

〈표 2〉에 제시한 사례들은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상소를 올렸다가 대역부도죄인으로 처형된 이덕사·유한신, 鎭川의 산속 깊숙한 곳에 있는 토굴에 숨어 살면서 허위로 妖術을 떠벌리고 백성들을 미혹시킨 백천식, 국왕 정조의 失德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김하재, 순조 즉위 직후에 터진 신유사옥과 관련한 황사영, 민심을 선동한 창원괘서사건 관련자 이호춘, 홍경래의 난의 중심인물 홍경래·우군칙, 천주교도로 처형된 남종삼과 남편을 살해한 박씨 여인 등의 가족 연좌 기록이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정조대 이후 연좌제 적용 양상에서도 영조대의 경우와 유사한 특징들이 발견된다. 즉, 법규와 달리 父·子에 대해 처형하는 대신 爲奴, 定配 등 減刑 조치하였고, 연좌 범위도 父子·母女·妻妾·祖孫·兄弟·姉妹·아들의 妻妾·叔姪 등을 망라하는 대신에 동거 가족 및 일부 叔姪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1866년 남편을 시해한 박복섬의 경우는 원래 부모나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연좌된 가족이 한 명도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영조대와 마찬가지로 이들 사례 중에서도 유독 처벌 강도가 높은 경우도 물론 있었다. 1801년 黃嗣永 백서사건으로 유명한 황사영 가족들의 경우가 그 한 예가 될 것 같은데, 〈표 2〉에서 보듯이 황사영의 어머니, 처, 아들 세 명이 연좌되었는데, 어머니는 경상도 거제도, 처는 제주도 대정현, 2세에 불과한 아들은 전라도 추자도에 각각 노비로 떨어져 생활해야 했다.

심한 경우 홍경래의 난 주모자인 홍경래, 우군칙의 경우처럼 그들의 妻, 弟까지 처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속대전』의 거병한 逆魁의 경우에는 부자 뿐 아니라, 형제, 처첩까지도 연좌하여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서 연좌되어 유배된 자들의 유배지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좌안』을 살펴볼 때 이들 연좌되어 지방에 정속된 자들의 경우 낯선 환경과 열악한 처지로 인해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녹녹치 않았던 듯하다. 이는 〈표 1〉과 〈표 2〉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사실인데, 그로 인해 연좌인들 중 일부는 유배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몇 년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다.[56]

19세기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牧民心書』에서 역적의 자식과 형제들이 아무 죄도 없는 자들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부녀자들이 하루아침에 女從이 되면 그 고

56) 병력을 동원한 반역을 꾀했다는 점에서 정부 측 입장에서 죄질이 아주 나쁜 洪景來 가족의 사례는 최악이다. 1812년 홍경래 처형 직후 11살의 어린 아들과 조카 셋 등도 모두 제주도, 흑산도, 고금도, 추자도 등 네 개의 섬으로 각각 쫓겨났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 네 명 모두 유배된 같은 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모두 사망하는 것으로 『연좌안』에 기록되어 있다. 이들 사망자들이 도배지(島配地)에 도착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도착한 지 몇 달이 채 안 되어 사망한 셈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통이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세태가 연좌된 사람에 대한 학대가 매우 심하다고 꼬집고 있다.[57] 실제로 〈표 2〉의 '비고'에서 보듯이 유배지에서 일부 연좌인들이 오래지 않아 사망하고 있듯이 하루아침에 낯선 지방에 정속된 연좌인들이 힘겨운 생활을 영위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 『연좌안』의 중요 사건들, 실제 연좌사례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다수의 연좌인들이 고향을 떠나 먼 고을에 정속되어 노비가 되거나 유배생활을 하는 등 분명 불우한 처지에 처해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선의 연좌제 적용 사례를 동 시기 중국과 비교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조선의 연좌제가 갖는 의미가 명확해질 수 있다. 필자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몇몇 중국사 연구자들의 분석으로 볼 때 조선의 연좌제 적용은 중국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

즉 동 시기 明律, 淸律에서 연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었던 중국과 달리,[58] 조선에서 연좌제는 연좌 범위, 사형을 면해주는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제한된 형태로 적용되었음은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컨대, 이러한 제반 사실은 중국 법률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적으로 변용, 적용된 연좌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인식을 위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실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한다. 이를 통해 연좌제의 남용으로 특징지어졌던 조선 정치문화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5. 맺음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시대 연좌율은 19세기 말 갑오개혁을 통해 폐지되기에 이른다. 『高宗實錄』에 보면, 1894년 6월에 軍國機務處에서 '죄인 본인 외에

57) 『牧民心書』 刑典 「恤囚」

58) 仁井田陞, 1959 『中國法制史硏究 : 刑法』, 東京大學出版會, 210면 참조. 실제로 청나라에서 연좌 범위를 확대한 규정을 한 가지 소개하면 『大淸律例』의 모반·대역죄의 경우이다. 규정은 모반, 대역죄의 '공모자는 주모자와 종범 구분 없이 모두 능지형으로 처단한다. 그들의 친조부, 부친, 아들, 아들의 아들, 형제, 성이 같든 다르든 간에 한집안에 살았던 동거인, 다른 족보에 기재되어 있든 있지 않든 간에 친삼촌과 형제의 아들, 병자와 불구자를 포함한 16세 이상의 남자 친척들은 모두 참형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기존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일족들을 연좌 처벌하고 있다(티모시 브룩 외(박소현 옮김), 2010 『능지처참 : 중국의 잔혹성과 서구의 시선』, 너머북스, 117면 참조).

친족에게 緣坐 형률을 일체 시행하지 않는다'는 議案을 올려 고종의 윤허를 받은 이후,[59] 같은 해 8월에 군국기무처에서 과거 연좌제에 연루되어 벼슬길이 막힌 죄인의 자손들을 등용할 것을 요청하자 고종은 갑자기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며 이 문제를 경솔히 의논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60] 그 며칠 뒤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고종의 윤허를 받아내긴 하였지만, 이와 같은 해프닝은 조선왕조 500여 년간 지속된 연좌제의 형률을 근대적 법률 개혁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국왕 고종이 일시에 완전히 불식시키기 어려웠던 저간의 사정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실제 연좌제는 이후 완전히 사라진 것인가? 연좌제가 형률로서 법전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연좌제의 망령이 지난 20세기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1980년에 새삼스럽게 제5공화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제12조 3항)이 새삼스럽게 명문화되었고, 제6공화국 헌법에서도 일부 자구의 수정을 거쳐 제13조 3항에서 연좌제 금지를 재확인한 것은 역설적으로 연좌제의 기능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61]

그래서일까? 연좌제를 비롯한 전통시대 형률과 정치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실제로 연좌제는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죄 없이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구래의 낡은 형률임에 분명하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의미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연좌제 관련 규정을 법전에서 추출해보고, 그 동안 다루지 못했던 실제적 적용 사례를 조선왕조실록과 『연좌안』의 사례를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조선시대의 경우 중국 『대명률』의 연좌 규정을 기초로 하였다. 연좌제 관련 기본 형률은 조선후기에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全家徙邊의 폐지 등 주목할 만한 변화상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5-17세기 연좌제 적용 사례를 실록에서 추적해본 결과, 연좌제 적용이 왕대별로, 정치적 사안의 경중에 따라 때론 다르게, 때론 남용되어 적용되는 경우도

59)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6월 계유.
60) 『고종실록』 권31, 고종 31년 8월 경신.
61) 이에 대해서는 김영범, 앞의 논문(1990), 346-347면 참조.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연좌형의 제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도 이루어짐으로써 연좌제를 조선 현실에 맞추어 적용하려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무엇보다도 『연좌안』의 18-19세기 연좌 기록을 추출, 분석한 결과 연좌제 적용이 실제 법규보다 남용되기 보다는 오히려 때론 완화된 형태로 적용되었음을 뚜렷한 경향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父子에 대한 減刑 조치, 연좌 범위의 축소 사례 등은 그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62]

이 글은 조선시대 연좌제 적용의 실상을 추적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필자의 문제의식이 닿아 있는 지점은 정치범 처벌에 담긴 법과 정치문화의 특징에 대한 해명과 새로운 해석에 있었다. 왜냐하면 그간의 조선시대 정치사 연구는 정치세력 사이의 政爭에 초점이 두어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조선시대 심각한 정치대립 속에서 파생되는 과도한 流血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치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치범 처벌과 관련한 연좌제 문제를 다뤄 보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질정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형률을 수용하며 유사한 법률문화를 공유하면서도 중국과 다른 독특한 한국적 법문화를 만들어낸 이유, 조선시대 정치권력의 속성을 이해하는 후속 작업 등은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주제어 : 연좌제, 『연좌안(緣坐案)』, 모반(謀反), 대역(大逆), 전가사변(全家徙邊), 정치범, 『대명률』

투고일(2011. 6. 13), 심사시작일(2011. 6. 21), 심사완료일(2011. 7. 13)

62) 이같은 검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김영범의 지적처럼 과연 조선에서 연좌제가 '근대적 국가 테러리즘의 한 始原型'을 이루고 있었다((김영범, 앞의 논문(1990), 343면)고 볼 수 있을 지는 재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 Analysis of the 『List of Souls Guilty by Association』

Sim, Jae-woo *

The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refers to a doctrine of punishment, which holds innocent people accountable only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involved in a certain level of relationship with a criminal offender.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there were several cases of political incidents such as treasonous conspiracies or general insurrections in which this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was applied. Such cases will be examined in this article, in order to determine how such principle was actually realized through the punishments of those political offenders, and also to define (or redefine) the nature of the political culture of Joseon, based upon such determination.

In this article, individual cases are analyzed in details, in order to find out how they were actually applied to Joseon-specific situations, rather than merely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relevant institution, by dryly examining all the legal claus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guilt by association' principle. Also, other than the well known sources such as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or Legal codes such as 『Dae'Myeong-ryul』 and 『Gyeong'guk Daejeon』, the 『List of Souls Guilty by Association("Yeonjwa-an/緣坐案")』, a document which was not previously fully examined and recently newly brought to my attention, was analyzed as a new source of information, to facilitate this study. This document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of how the 'guilt by association' principle was applied to the Joseon cases, since the days of King Yeongjo through the days of King Gojong.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shows that today's perception of the 'guilt by association' principle was not that very well founded upon empirical data. The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ssociate Professor.

negative view upon the Joseon political culture, which was formed upon such unfounded perception and also a general misconception that believed the 'guilt by association' principle was 'abused and overused' at the time,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future.

Key Words : principle of 'guilt by association,' 『List of souls guilty by association (緣坐案)』, conspiracy of treason(謀反), capital treason(大逆), 'entire house condemned to a border region("Jeon'ga Sabyeon/全家徙邊"), political offender, 『The Great Ming Code(大明律)』